

(주)영원무역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내부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의안에 관하여 이사회 상정에 앞서 사전 심의한다.

① 공정거래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다음 각호의 대규모내부거래(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4. 주주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규정된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② 회사의 최대주주, 그의 특수관계인 및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는 거래 중 상법 제542조의 9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거래

③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하거나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장 구 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2인 이상의 독립이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 이사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 의

제5조(소집)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소집절차)

① 위원회의 소집은 회의일 전일까지 개최시기 및 장소를 위원 및 참석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② 위원 전원의 동의에 따라 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소집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 기타 이해관계인들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장 기 타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한다.

제11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06월 09일부터 시행한다.